의안번호	2200671
의 뢰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4.9.30.
추계번호	24B1018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며, 관련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5,100만원, 2030년 1억 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6억 400만원(연평균 1억 2,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50	—	—	50	—	100	20
과로사 등 실태조사 (안 제9조)	40	40	40	40	40	200	40
조사·연구 등(안 제10조)	50	50	50	50	50	250	50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안 제11조)	10.8	10.8	10.8	10.8	10.8	54	11
합 계	151	101	101	151	101	604	121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기본원칙)	이 법은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이하 “과로사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대책(이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사업자ㆍ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과로사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7.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과로사등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의 발생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이 경우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조사·연구 등)	정부는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조직구조·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이하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3항) 1.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의무규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12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3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14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5조(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16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7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기본원칙)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안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12개 법정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과로사등 예방과 관련한 기본계획도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 본문참조

1) 코드: 4154-350의 내역사업
2) 코드: 4152-353의 내역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제1항: 미첨부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이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2023년 기준 12개 법정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계획의 수립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수 있음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5	안 제9조(과로사 등 실태조사)	○	• 유사사례 참고 –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6	안 제10조(조사·연구 등)	○	• 유사사례 참고 – 조사·연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7	안 제11조(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	• 유사사례 참고 –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8	안 제12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 미첨부 – 2023년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방송·언론매체 등을 통해 산재예방 알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문화 선진화[1] 사업에 85억원(2024년 예산 기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교육·홍보 업무는 고용노동부 기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의 확대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 –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9	안 제13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	• 미첨부 – 제정안은 상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위해 38억원[2]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 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10	안 제14조(국회에 대한 보고)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1	안 제15조(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2	안 제16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	• 미첨부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민간단체 활동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13	안 제17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조치)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5,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2]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50	—	—	50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과로사등 실태조사(안 제9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로사등의 발생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유사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 (용역예산) 4,000만원(2023년)
-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3)]
- (수행기관) 한국안전학회

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8호

[표 3]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태조사	40	40	40	40	40	2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조사・연구 등(안 제10조)

❑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조직구조・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과로사등 예방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5,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4] 조사・연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조사・연구 등	50	50	50	50	50	25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안 제11조)

❑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구성)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2024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5개[4]가 있으며, 본 추계서는 제정안에 명시된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와 규모(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가 유사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5]를 토대로 산출

4) 2024년 4월 기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제외

5)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기업·학교·정부 등 사회 구성 주체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처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원 수는 정원 대비 45.5%로 가정(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9명)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6)]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제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9	9	9	9	9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0.8	10.8	10.8	10.8	10.8	54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며, 관련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5,100만원, 2030년 1억 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6억 400만원(연평균 1억 2,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원 10명으로 구성

6)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50	—	—	50	—	100	20
과로사 등 실태조사 (안 제9조)	40	40	40	40	40	200	40
조사·연구 등(안 제10조)	50	50	50	50	50	250	50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안 제11조)	10.8	10.8	10.8	10.8	10.8	54	11
합 계	151	101	101	151	101	604	121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